



환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약국 등 준요양기관은 공단에 **요양비 지급청구**가 가능합니다



Q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 방법은

환자 또는 그 가족이 '약국 등 준요양기관'에 요양비 지급청구를 위임할 경우 '**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**'을 공단에 제출(우편, 방문, 팩스)하여야 합니다.

※ 다만, 약국 등 준요양기관이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신하여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Q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 시

1. 요양비 지급청구 **위임장**
2. 위임인 **신분증 사본**(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가능)을 **반드시**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 요양비 지급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

①진료받은 사람(환자) ②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며 ③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할 수 있습니다.

요양비 급여제도란?

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(약국,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·임대업소를 '준요양기관'이라 한다)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, 요양(소모성재료·관리기기 구입, 기기대여 등)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급여 품목은 ①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②산소치료(가정용, 휴대용) 기기 대여 ③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 및 소모품 ④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⑤자가도뇨 소모성재료 ⑥수면무호흡증 환자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⑦출산비

Q 요양비 전산청구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

1. 약국 등 준요양기관 : (신)요양기관정보마당 (<https://medicare.nhis.or.kr>)
2. 환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<http://www.nhis.or.kr>) ※ [민원여기요](#) > [개인민원](#) > [보험급여](#) > [요양비청구](#)

☎ 문의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 바랍니다.

